[별지 제1호 서식] 표준 협약서

# 협 약 서

본 협약서는 ○○○○사업(이하 “본 사업”)의 수행에 있어 통합사업자(이하 “SI사업자”라 한다)와 소프트웨어공급자(이하 “공급자”라 한다)의 상호협력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**제1조(협약의 목적)** 이 협약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SI사업자와 공급자 상호 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원칙)** SI사업자와 공급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 등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수요기관의 요구 또는 조정사항 등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역할 및 책임)** ① SI사업자는 통합과 관련된 업무 및 하자치유의 책임을 지며, 공급자는 설치·납품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, 성능,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. 다만,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수요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통합업무와 관련하여 SI사업자는 공급자의 작업일정, 내용, 품질 및 공정 등에 대해 조정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및 협조 요청사항을 적시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SI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공급자는 제2항에 따른 SI사업자의 요청사항이 사업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SI사업자와 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을 상세히 명시한 세부협약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4조(분쟁 및 조정)** ① SI사업자와 공급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SI사업자 또는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 협의가 결렬된 경우 수요기관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을 받은 수요기관의 장은 본 협약당사자가 포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, 별도의 외부 분쟁조정기구를 통하여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.

20 년 월 일

통합사업자 (인)

공 급 자 (인)

**기관장 귀하**